

4.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비비 사용 보고

사업목적

- 서울재활병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폐쇄 및 진료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개소(병원 3, 의원3)
- 사업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81조(비용보조)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
- 사업내용 :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
- 사업예산 : 6,070백만원(시비 100%)

예비비 사용금액 및 내용

- 사용대상 : 서울재활병원
- 사 용 액 : 440백만원
- 사 유 :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따른 시설폐쇄 등으로 진료수입 감소분 지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산현액	집 행 액 (~10월)	추가집행액 (11월)	지출액계
계		6,510,935	6,070,860	440,075	6,510,935
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운영	본예산	6,070,860	6,070,860	0	6,070,860
	예비비	440,075	0	440,075	440,075

추진결과

-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: '20. 11. 5.
- 손실보상 관련 예비비 지출 : '20. 11. 20.

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:강선미 ☎2133-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:엄삼용 ☎7460 담당:유재경☎7461